

# 축산등록제, 농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축** 산등록제’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에 처음에는 농가별로 등록을 필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낙농업을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따르자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령 조항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농림부의 배포 자료에 의하면 도입배경에는 사육밀도의 증가에 따라 질병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면 소농가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거의 없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연 소농가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거의 없다는 말인가?

둘째, 등록을 위한 축사면적은 100m<sup>2</sup>(10두 규모)농가, 50m<sup>2</sup>이상(50두 규모)농가는 2005년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렇게 법령대로 한다면 낙농분야 94%, 사육두수 99%가 등록대상이 된다. 그러면 과연 몇 농가가 낙농산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

셋째, 환경부의 악취방지 제정법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축사 시설에도 적용될 것이다.

축산등록제 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낙농가들에게 악취방지 제정법까지 적용이 되니 어떻게 낙농을 하란 말인가?



오정곤  
경남도지회장

현재 국민의 먹거리인 우유의 자급률이 67%인데, 이렇듯 우리 낙농가를 말살하여, 어떻게 원유수급을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기본적인 방역시설이라든지, 쌀 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의 직불제 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위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다.

벼랑 끝에 선 낙농가를 바다에 추락시키지 말고 한배를 타고 같이 합심해서 항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순박한 농민을 환경법이나 오수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려깊은 선처를 부탁하고 아울러 우리 낙농가들도 축산등록제에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